

문서번호 : 10-03-사무-09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류제성 변호사)
제 목 : 민변 법률의견서
전송일자 : 2010. 3. 30. (화)
전송매수 : 6 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제7597호)」,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7582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
정법률안(7486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제7597호)」,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7582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7486호)」에 관한 민변의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니 법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붙임. 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제7597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1부.
2.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7582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1부.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7486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1부.끝.

2010년 3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현



붙임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제7597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주요 개정내용

- 사면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을 “4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외부위원에는 대법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2인씩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 대통령령에 위임된 심사내용의 공개시기와 공개방법을 법으로 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위원회의 심의서는 특별사면 등을 행한 즉시,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하되, 다만 심의서와 회의록 내용 중에서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5항)

2. 검토의견

-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개정안의 내용은 최근 대법원의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확정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2.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7582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주요 개정내용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동법 제 91조 1항의 사형집행 방식을 교수, 약물주사, 전기살, 가스살로 정함.

2. 검토의견

(1) 사형 자체가 비인도적이고 위험적인 형벌이므로 사형을 전제로 한 개정안에 반대함.

2010.2.25. 헌법재판소가 비록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도 보충의견을 통해 사형의 선고는 정의와 형평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것도 비례의 원칙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재판관 이강국), 사형제나 개별적인 사형 조항의 존치나 폐지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성질의 문제이다(재판관 민형기),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의 문제는 향후 입법자에 의한 입법의 개폐 여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재판관 송두환)라고 밝힌 바 있음¹⁾.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본질적인 기본권임에도 이를 박탈하는 사형은 헌법 37조 2항의 본질내용 침해금지원칙에 반할 수밖에 없는 위험인 형벌이다. 또한 생명은 지고의 가치를 지닌 인간을 존재하게 해주는 요소로써 어떠한 범죄의 응보를 위해서도 거둘 수 없는 것이며 그 자체가 이미 비인도적이다. 그리고 형집행 이후 법관의 오판이 밝혀진다면 그것을 되돌릴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한 형집행방식임.

따라서 국회가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사형제의 입법적 해결을 위한 국민적 합의 수렴임에도, 사형제 존치를 전제로 사형집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방향이라고 볼 수 없음.

1) 헌법재판소 2010.2.25. 2008헌가23

(2) 개정안의 사형집행 방식이 기존과 다른 인도적인 방법이라 볼 수 없음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은 그 자체로 반인도적임. 또한 약물주사나 전기살, 가스살이 교수형과 달리 고통을 적게 준다거나 사망의 두려움을 줄여주는 새로운 획기적 방법이라고 보기도 힘들. 따라서 개정안은 인도적 사형집행방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됨.

붙임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7486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주요 개정내용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전문분야연구단체 설립을 법원행정처장의 허가사항으로 하되 연구회의 자율성 및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함.

2. 검토 의견

(1) 연구목적의 학술단체 설립은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로서 보장되므로 법률적 근거가 불필요함.

연구목적의 학술단체의 설립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적극적 측면의 권리로서 헌법상 일반 결사의 자유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장됨. 따라서 법관의 법조실무 또는 법학 연구모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에 제한이 있을 수 없고 따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지도 않음.

(2) 학술단체 설립을 법원행정처장의 허가사항으로 함은 위헌소지가 있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정치권이 특정 시국사건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계기로 법원내 특정 연구회 해체를 주장하는 사태를 맞이하여, 오히려 연구회 설립근거를 법제화함으로써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것임.

그러나 연구모임 구성을 법원행정처장의 허가사항으로 하는 것은 도리어 법관의 학문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음.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인 바 통상 기본권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허용한다면 사회에 위험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일단 금지시켜놓고 특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행정청의 허가처분으로서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임. 따라서 법관의 학술적 연구단체설립은 허가의 대상이 아님.

(3) 연구단체는 법관들의 사적 모임에 불과하여 법원조직법에 규정할 사항이라 볼 수 없음.

법원조직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동법 1조) 그런데 법관들로 구성된 전문분야연구단체는 법관들의 사적 모임에 불과하고, 법원의 조직이 아니므로 법원조직법에 규정될 사항이 아님. 따라서 개정안은 법체계적으로도 부적절함.